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080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춘화, 신경철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5. 1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가단201576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3. 3. 11.자 25,000,000원, 2013. 4. 16.자 3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G와 D 사이의 자녀이다.

나. A의 D에 대한 채권

1)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2006. 3. 24. 만기일을 2009. 7. 24.로 정하여 2,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 2007. 9. 21. 만기일을 2009. 7. 21.로 정하여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하여 주었고, D은 F의 A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대출채무에 관하여 3,640,000,000원, 이 사건 제2차 대출채무에 관하여 1,300,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F은 A에게 2009. 7. 24. 이 사건 제1차 대출채무를, 2009. 7. 21. 이 사건 제2차 대출채무를 각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각 송금 내역

D은 2013. 3. 11.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2013. 3. 11. 25,000,000원, 2013. 4. 16.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채권자취소권의 성립과 원상회복청구권

###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2009. 7.로부터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위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차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7. 24., 이 사건 제2차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9. 7. 2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17.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75976호)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이 사건 송금의 법적 성격(사해행위 해당 여부)

####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계좌로 이 사건 송금을 하여 5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송금행위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위 55,000,000원의 가액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송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D이 이 사건 송금에 따른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 3) 구체적 판단

D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피고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D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체된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계좌의 경우 D이 거주하였던 광주에서 주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M 등 D과 금전관계에 있는 자들과의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N생으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던 당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였던 피고 명의 우체국 계좌의 경우 이 사건 송금 당시에도 서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④ 피고 계좌에서 피고가 실제로 사용한 우체국 계좌로 용돈 명목으로 이체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권혁준, 판사 박미선